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52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권향엽·최민희·허성무  
강준현·송재봉·임호선  
오세희·이재관·김남근  
백혜련·소병훈·장철민  
박희승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침해 관련 분쟁조정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는 각각 근거 법령과 운영 체계가 상이하여 분쟁 접수·상담, 조정 이후 피해구제로 연계되는 통합적·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관련 분쟁은 단순한 법률상 권리 다툼을 넘어 거래 중단, 기술 활용 제한,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피해 문제로서,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 체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5호, 제20조의5 신설 및 제28조의5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 중 “자율적 조정”을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0조의5”를 “제20조의6”으로 한다.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을 각각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로 하고,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의 설치 및 업무)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정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운영 지원
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운영 지원
4.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분쟁의 조정
5.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등

6. 분쟁 상담 및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지원

7. 분쟁 사례 발굴·분석 및 제도개선 건의

8. 그 밖에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조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5제1항 중 “제20조제2항제5호”를 “제20조의5제2항제1호”로,  
“재단”을 “조정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생략)</p> <p>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 4. (생략)</p> <p>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u>자율적 조정</u> 지원</p> <p>6. <u>제20조의5</u>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p> <p>7. ~ 9. (생략)</p> <p>③ ~ ⑤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u> -----</p> <p>6. <u>제20조의6</u>----- ----- -----</p> <p>7. ~ 9.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제20조의5(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의 설치 및 업무)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둔다.</u></p> <p><u>② 조정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p><u>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u></p>

	<p><u>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운영 지원</u></p> <p><u>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운영 지원</u></p> <p><u>4.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분쟁의 조정</u></p> <p><u>5.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등</u></p> <p><u>6. 분쟁 상담 및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지원</u></p> <p><u>7. 분쟁 사례 발굴·분석 및 제도 개선 건의</u></p> <p><u>8. 그 밖에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p> <p><u>③ 정부는 조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생략)</u></p>	<p><u>제20조의6(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현행 제20조의5와 같음)</u></p>
<p><u>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생략)</u></p>	<p><u>제20조의7(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현행 제20조의6과 같음)</u></p>
<p><u>제28조의5(수·위탁분쟁조정협의</u></p>	<p><u>제28조의5(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u></p>

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  
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③ (생략)

의 설치) ① 제20조의5제2항제1호

-----  
-----  
-----조정원-----  
-----  
-----.

②·③ (현행과 같음)